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2. 2. 22

발의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을 개정코자 한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사무기구 및 간사를 사무국 및 사무국장으로 변경함.

1. 개정 이유

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을 개정코자 한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구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의 직명의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

나. 구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를 사무국 및 사무국장으로 변경함.

3. 개정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

4. 개정 안

- 별첨 (안)

5.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불요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사무기구”를 “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중 “간사”를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중 “사무기구”를 “사무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